계약학과선도전문대학사업추진위원회운영규정 5-1-62

규정번호 5-1-62
제정일자 2021.9.13
최근개정 2024.7.24
개정차수 2차 개정
관리부서 조기취업형계약학과사업단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리대학의 “계약학과선도전문대학사업 추진위원회”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계약학과선도전문대학사업의 기본정책 방안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
2. 계약학과선도전문대학사업의 사업 신청 및 결과, 성과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3. 계약학과선도전문대학사업의 관련 운영규정 자문에 관한 사항
4. 계약학과선도전문대학사업의 사업 소요예산의 책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
5. 계약학과선도전문대학사업의 자체평가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계약학과선도전문대학사업 사업단 구성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한 필요한 제반 사항과 기타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(개정 2024.7.24.)

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, 위원은 교내·외 전문가를 포함한 13인 이내로 구성하고,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장 및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.(개정 2024.7.24.)

② 부위원장은 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전문대학 사업단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(개정 2023.06.19., 2024.7.24)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개회 및 의결정족수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.

제8조(업무관리 및 간사) 위원회는 사업단에서 관장하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9조(예산)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우리대학 소속 교·직원이 아닌 외부위원은 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9월 13일로부터 시행하되,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(제4조제2항)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2조제7호, 제4조제1항·제2항)